



마.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 단,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가 지원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지원 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릭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휴게시간 미포함)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 선택
-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 832천원 / 보육도우미 786천원
- 인건비 지원기준(연령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만 60세까지 지원(정년이 아닌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고용치 아니한 경우 후순위로 선정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7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 보조 •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기준(휴게시간 미포함)이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민원신청

민원결과

사례모음

소통광장

정보광장

민원결과

응답소 민원결과 >

120 민원결과 >

SNS 민원결과 >

방문/서신/유선 민원결과 >

응답소 민원결과

홈 > 민원결과 > 응답소 민원결과 > 상세보기

민원제안신청

진행상황	완료
신청일시	2018-11-01 14:28
제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관련
내용	<p>안녕하세요, 전화가 안되어 홈페이지에 문의드립니다.</p> <p>2018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33쪽에 보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으로 되어있는데</p> <p>"단,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가 지원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 지원 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p> <p>이렇게 나와있습니다.</p> <p>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인건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못받고 있는&#39; 인건비 미지원시설&#39;인데요.</p> <p>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추가지원에 협동어린이집만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 <p>2015년도에는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할때는 국공립, 서울형, 협동어린이집, 신규 어린이집만 우선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협동어린이집이 수가 적기도 하고 장점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p> <p>2017년부터는 갑자기 협동어린이집만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 것 같네요.</p> <p>서울에는 2017년 현재 협동어린이집이 29곳밖에 안되는데 왜 제외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유를 꼭 알려주세요.</p>

최종답변

답변일시	2018-11-05 20:30
답변내용	<p>안녕하세요, 보육담당관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담당자입니다.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하고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데 취지는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규모가 영세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신의견은 보육담당관차원에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p>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김은숙(☎ : 02-2133-5103)

최종답변 결재진행이력

결재일	부서명	결재자직위명	결재자명	결재유형
2018-11-05 20:30:32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결재

■ 추가답변요청

요청일시

2018-11-23 15:45

요청내용

전화가 안되어, 다시 보육기획팀 이경복 주임께 문의드립니다.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추가지원 대상에 협동어린이집이 빠진 이유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대상 자체에 협동어린이집이 빠진 것은 명백히 차별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또한 내년 서울시보육사업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여러분의
작은소리까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접수번호 : 20181101902846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 요청으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지원 요청기관이 민간과 가정인듯하고요
내년에 서울시 보육사업에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 김은숙

전화번호 : 02-2133-5103